

자견감사대장

문서번호	경공 5001-1-16					
처리기한	1998. 10.	모름				
기안	1998. 10.	행부				
발신	1998. 10.					
과장 부장			12 3800			
3 75 2						
기안자	김 봉 기	합	(법규실) 기획부장	전결근거	직무권한분류표 제1장 제1항 제4호	
소속	금융기획과					
직위	행원 전화 4040	의				
수신 참조 제목 「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」 개정						
최근의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하여 완제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불임과 같이 「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」을 개정하고자 합니다. 불 임 : 「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」 개정(안) 1부. 끝.						
접수 1998. 10. 21 감사관 접수 1998. 10. 20 법규실						
사본수신처 : 한국은행 행내 021-10('89.11.19) ()						
(결재서식)			업무 연혁 기록	필요 불요	공 람	

「한국은행 출액한도대통령령」 (제123호)

제 1 조 ~ 제 8 조 (생 략)	제 1 조 ~ 제 8 조 (현행과 같음)	
제 9 조(융자금의 구분) ① 일반수출입금융은 자금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취급(이하 "용도별 금융"이라 한다)하여야 한다.	제 9 조(융자금의 구분) ① 일반수출입금융은 자금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취급(이하 "용도별 금융"이라 한다)하여야 한다.	
1 ~ 2 (생 략)	1 ~ 2 (현행과 같음)	
(신 설)	3.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완제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구매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(이하 "완제품구매자금"이라 한다)	- 완제품구매자금 신설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
제 10 조 ~ 제 11 조 (생 략)	제 10 조 ~ 제 11 조 (현행과 같음)	
제 12 조(융자한도) ① ~ ③ (생 략)	제 12 조(융자한도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	
④ 중소기업 등에 속하지 않은 업체로서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체(이하 "비계열대기업"이라 한다)에 대한 융자한도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산정한다.	(삭 제)	- 불필요한 조문삭제
(신 설)	④ 실적기준으로 완제품구매자금을 수혜하는 업체(이하 "실적기준 완제품구매자금 수혜업체"라 한다)에 대한 융자한도는 당해 업체의 과거 수출실적을 감안하여 외국환은행이 정한다.	- 완제품구매자금 융자한도 규정
⑤ ~ ⑥ (생 략)	⑤ ~ ⑥ (현행과 같음)	

제 13 조(융자한도의 산정) ① 제12조에서 정하는 자금별 융자한도는 각 외국환은행이 당해업체와 거래한 자사제품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, 포괄금융 융자한도는 당해업체의 주거래외국환은행이 자사제품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.

② ~ ③ (생 략)

제 14 조(융자금액) 용도별 금융 및 포괄금융의 융자금액은 제 12조에서 정한 융자한도 범위내에서 자금별로 다음 각 호의 대상금액에 「외국환관리규정」에서 정하는 기준환율의 융자취급일전월 평균환율(이하 "평균기준환율"이라 한다)을 곱한 금액 범위내로 산정한다.

1 ~ 3 (생 략)

(신 설)

제 15 조(융자시기) 융자는 다음과 같이 자금소요시기에 맞추어 취급하여야 한다.

다만, 포괄금융 및 실적기준 생산자금의 경우에는 소정 융자금액 범위내에서 수시로 취급할 수 있다.

1 ~ 2 (생 략)

(신 설)

제 16 조 (생 략)

제 17 조(융자취급의 제한) 임가공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완제품을 조달하는 경우 당해 어음결제를 위한 원자재금융을 취급할 수 없다.

제 13 조(융자한도의 산정) ② 생산자금, 원자재금융 및 포괄금융의 융자한도는 자사제품 수출실적을 기준으로, 완제품구매자금의 융자한도는 타사제품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
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제 14 조(융자금액) (현행과 같음)

1 ~ 3 (현행과 같음)

4. 완제품구매자금의 융자금액은 내국신용장어음의 외화금액

제 15 조(융자시기) (현행과 같음)

1 ~ 2 (현행과 같음)

3. 완제품구매자금의 융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어음을 결제할 때

제 16 조 (현행과 같음)

제 17 조 (삭 제)

- 완제품구매자금의 융자한도 산정방법 규정

- 완제품구매자금 융자금액 규정

- 완제품구매자금 융자시기 규정

- 완제품구매자금 신설에 따라 완제품을 임가공 방식으로 조달하는 경우에도 원자재금융을 지원

제 18 조 ~ 제 28 조 (생 략)

제 29 조(개설한도) ① 원자재 구매를 위한 내국신용장(이하 "원자재내국신용장"이라 한다)의 개설한도액은 일반수출입금율을 수혜하는 업체의 경우 제12조에 의해서 외국환은행이 정한 용자한도 범위내로, 건설·무역수출금융을 수혜하는 업체의 경우 제20조에서 정하는 용자대상계약서의 소요원자재 해당액 범위내로 한다.

② 무역금융 용자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체의 원자재내국신용장 개설한도액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③ 완제품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업체의 개설한도액은 원수출신용장 등의 금액 범위내로 한다.

다만, 정부가 지정한 종합무역상사의 경우에는 완제품내국신용장 개설신청 전월로부터 과거 1년간 타사제품 수출실적의 1/6에 해당 금액 범위내로 한다.

④ ~ ⑤ (생 략)

⑥ 용자취급은행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 단서조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개설할 수 있다.

제 30 조 ~ 제 37 조 (생 략)

(신 설)

제 18 조 ~ 제 28 조 (현행과 같음)

제 29 조(개설한도) ① 원자재 구매를 위한 내국신용장(이하 "원자재내국신용장"이라 한다)과 완제품내국신용장의 개설한도액은 제12조 및 제20조에 의해서 외국환은행이 정하는 용자한도 범위내로 한다.

② 무역금융 용자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체의 원자재내국신용장과 완제품내국신용장의 개설한도액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(삭 제)

③ ~ ④ (현행과 같음)

(삭 제)

제 30 조 ~ 제 37 조 (현행과 같음)

부 칙

이 세칙은 1998. 10. 26부터 시행한다.

- 완제품구매자금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

- 완제품구매자금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

- 완제품내국신용장의 개설 한도는 제1항으로 이관하여 정비

- 항제상

- 불필요한 조문 삭제

- 시행일자 명시